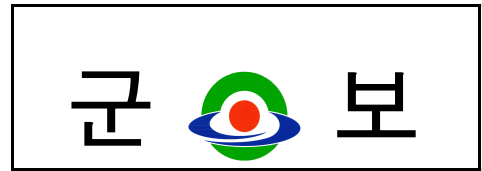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02호 2019. 11. 7.(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9-1219호)

회 람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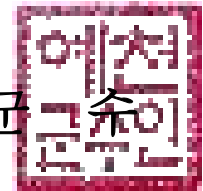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예 천 군



1. 개정이유

예천사랑상품권의 종류를 권면금액 5천원, 1만원 2종에서 5천원, 1만원, 3만원 3종으로 확대하여 상품권 사용자의 이용과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천사랑상품권의 종류 확대 (안 제2조)

- 현행 : 예천사랑상품권 2종 권면금액 5천원, 1만원
- 변경 : 예천사랑상품권 3종 권면금액 5천원, 1만원, 3만원

3. 개정규칙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7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예천군 새마을경제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의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
- 전화 : 054-650-6094, 팩스 : 054-650-6099
- 전자우편 : limlim714@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종”을 “3종”으로, “1만원”을 “1만원, 3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예천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예천군과 예천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판매대행 단체의 상품권 판매대행에 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호합의 하에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상품권은 오천원(5,000원)권, 일만원(10,000원)권, 삼만원(30,000원)권으로 발행한다.

제4조(유통 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예천군 일원으로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은 총괄 판매대행점인 “군금고”에 보관하며, “군금고”에서 읍·면 판매대행점으로 반출한다.

② 매월 말 총괄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현황을 정산하고, 판매대행단체는 상품권 환전현황을 정산하여 익월 10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과 읍·면별 판매대행점, 판매대행단체는 상품권 관리·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6조(할인율) ① 상품권의 할인율은 상품권면 금액의 10% 범위에서 군수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법인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군수가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판매대행단체에 7일전에 통보한다.

제7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 환전대행수수료는 1000분의 ××로 한다.

- ②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판매대행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교환처) 상품권의 현금 교환처는 총괄 판매대행점과 읍·면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제9조(상품권의 폐기) 유통된 상품권이 회수 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이 참관하여 폐기한다.

제10조(상품권 위·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교환 지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조·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의무 및 배상) 예천군과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예천군과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상품권 발행권자
주소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성명 예천군수 (인)

상품권 판매대행점
주소
성명 (인)

상품권 판매대행단체
주소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예천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1. 예천사랑상품권 ××단계 ××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

권면금액	발행수량	발행금액	비고
계	×××만장	×××억원	
5천원권	×××만장	×××억원	
1만원권	×××만장	×××억원	
3만원권	×××만장	×××억원	

2. 예천사랑상품권 인계인수 사항

○ 예천군, 한국조폐공사, ××××(금융기관)는 위 1항목의 ‘××단계 ××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과 같이 5천원권 ×××만장, 1만원권 ×××만장, 3만원권 ×××만장을 20××.××.××. ××××(장소)에서 상호 인계 인수함.

○ 인계인수자

- 예 천 군	:	직	성명	(서명)
- 한국조폐공사	:	직	성명	(서명)
- ××××(금융기관)	:	직	성명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예천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

(년 월분)

권 중	인 수		판 매		환 전		재 고	
	일련번호	매 수	일련번호	매 수	일련번호	매 수	일련번호	매 수
계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천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직인)

예 천 군 수 귀 하

[별지 제10호 서식]

예천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상품권 종류	수량(매)	금액(천원)	비 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위와 같이 예천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예천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입 금 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판매대행점 귀하					
예천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	수량(매)	금액(천원)	비 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					

[별지 제12호 서식]

예천사랑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

권면금액	매 수	폐기방법	비 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예천사랑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 직 성 명 (인)

확 인 자 () : 직 성 명 (인)

참관자(담당 공무원) : 직 성 명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예천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1. 예천사랑상품권 현황

(단위 : 천원/매)

권면금액	발 행 내 역		판 매 내 역		보 유 내 역	
	매 수	발행액	매 수	판매액	매 수	보유액
계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2. 예천사랑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 원)

환전액	미환전액	이자발생액	통장잔액	비 고

※ 첨부 :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천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참관자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예천사랑상품권 발행대장

인수일	발행번호		발행매수	발행금액	보관 장소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품권의 종류) 예천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 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 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예천사랑상품권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종 류를 <u>2종</u> 으로 하며, 권면금액은 5천원, <u>1만원</u> 으로 한다.	제2조(상품권의 종류) ----- ----- ----- ----- ----- ----- --- <u>3종</u> ----- --- <u>1만원, 3만원</u> ---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와 종류별 권면금액, 디자인 등은 군수가 정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